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59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 안 자: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장인홍 의원이 발의한(찬성: 13명)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교육 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김종욱 의원 외 14 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2014. 12. 18)에서 병합심사 한 결과,

○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보완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학교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이 학생 및 이용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4. 7. 7)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 학교 옥상 임대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아닌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을 기준으로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학생 및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학교매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 18조).
- 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면적기준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30조).
- 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 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2조제5항).
- 마. 안 제26조제7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함(안 부칙 단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사용목적
 - 2. 사용기간
 - 3. 사용료
 - 4. 사용료 납부방법
 - 5.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 6. 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 7. 허가조건
 -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30조 중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100분의 10 을 초과한"을 "100분의 5를 초과한"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7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	제18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
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명시하여야 한다.	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 용목 적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2. 사용기간
3. 사용료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7. 허가조건
<u><신 설></u>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
	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
	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
	3항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
	<u>가할 수 있다.</u>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
	<u>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u>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
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u>100분의 10</u>	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u>100분의 5</u>
이상 증가한 경우, <u>100분의 10을 초과한</u>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u>이상</u> 증가한 경우, <u>100분의 5를 초과한</u>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구군에 내하여 검색 조정하는 검색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구군에 네이어 검액 조정이는 검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00군러 70프도 인터. 	100판위 /V프노 인기.
제42조(변상금의 부과) ① ~ ④ (생략)	제42조(변상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
	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
	터 1년으로 한다.